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23호서식] <개정 2021. 9. 17.>

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4일

신청인	상호 또는 법인명	등록번호
	소재지	전화번호
	대표자	생년월일
	전문분야 **종합:** [ ] 종합 **설계·사업관리:** [ ] 일반 [ ] 설계등용역 (□설계등용역 일반*, □측량, □수로조사) [ ] 건설사업관리 *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: [ ] 계획·조사·설계 포함, [ ] 계획·조사·설계 제외 **품질검사:** [ ] 일반 [ ] 토목 [ ] 건축 **[ ] 특수*** *** 품질검사(특수) 세부분야 선택** [ ] 골재 [ ] 레디믹스트콘크리트 [ ] 아스팔트콘크리트 [ ] 철강재 [ ] 섬유 [ ] 용접(방사선비파괴검사) [ ] 용접(초음파비파괴검사) [ ] 용접(자기비파괴검사) [ ] 용접(침투비파괴검사) [ ] 말뚝재하	

재발급 신청사유 (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 기재)	
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수탁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	수수료
	헐어 못 쓰게 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(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	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

처 리 절 차

신청서	→	접수	→	첨부서류 검토	→	확인	→	시·도지사 통보	→	발급
신청인		수탁기관		수탁기관		수탁기관		수탁기관		시·도지사

210㎜×297㎜ (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)